

광주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70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4. 23.

판결 선고 2021. 6. 1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12,197,2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197,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14,895,6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95,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4483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0. 'C 등은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1,285,457,061원과 그 중 각 4,690,516,133원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12,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각 4,445,376,709원과 그 중 각 2,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각 3,000,000,000원을 지급하며, 각 4,445,376,709원과 그 중 각 2,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각 3,0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2,595,649,398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5,7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와 C 사이에는 2018.8. 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배우자이자 C의 부친인 E은 1994. 3.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 10.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3/13 지분), 자녀인 F(2/13지분), G(2/13 지분), C(2/13 지분), H(2/13 지분), I(1/13 지분), J(1/13)[E의 자녀인 망K(2/13)이 2005. 7. 3. 사망하여 자녀 I, J이 대습상속하였다]이 있다. 피고는 F, G, C, H, I, J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14. 접수 제24672호로 2019. 1.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8. 11. 16.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298,0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9. 10.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이 거주한 주택으로서 피고가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피고는, 답변서에서 그 주장내용의 법률적 의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진행된 각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의 주장내용을 위와 같이 선행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과 피고의 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C 작성의 2021. 3. 4.자 사실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C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13년 8월경 원고와 민사소송 중이어서 부모님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를 2013년 10월경 이미 밝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를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내용과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거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있을 뿐이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와 C이 C의 상속지분인 2/13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2020. 7.

1.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4.경 기준 85,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위 말소 당시를 기준으로 5,718,04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 시가 85,000,000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718,049원을 공제한 나머지 79,281,951원(= 85,000,000원 - 5,718,049원) 중 C의 상속분 2/13에 해당하는 12,197,223원(=79,281,951원 × 2/13, 원 미만 버림)이 이 사건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액과 C의 상속가액 12,197,223원 중 적은 금원인 12,197,2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197,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가액배상으로 14,895,606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동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5층 호 59.8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대 19588.1㎡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9588.1분의 35.04